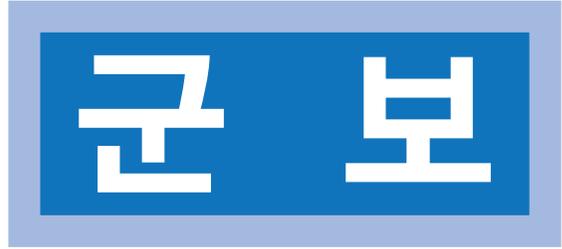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415호 2019. 5. 15(수)

입 법 예 고

장수군 공고 제 2019 - 516호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장수군 공고 제 2019 - 534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장수군 공고 제 2019 - 536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장수군 공고 제 2019 - 539호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회 람								
--------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5)

장수군 공고 제2019-51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5

장 수 군 수

1. 제안이유

- 가. 2018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수돗물 평가 위원회 부위원장을 환경위생과장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변경.
- 나. 2016년 기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약 41.6%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상수도 재정악화로 연결되어 수도사업 재정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지구적 노력이 없다는 환경부의 평가로 사업 보조금의 패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재정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 나.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부칙 일부개정
- 다.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개정
- 라.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별표4 ‘구경별 기본요금’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수도법」제38조제1항, 제2항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2019. 05.(20일 이상)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조례 제 호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조례 제1958호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2년 7월”을 “2019년 7월”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한 임명한다.(개정2015.10.27.)</p> <p>부 칙(제1958호, 2012.06.13.)</p> <p>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2에 의한 요율은 해당 연도별 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며, 별표4에 의한 요금 적용은 2012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p>	<p>제48조(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한 임명한다.(개정2015.10.27.)</p> <p>부 칙(제1958호, 2012.06.13.)</p> <p>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2에 의한 요율은 해당 연도별 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며, 별표4에 의한 요금 적용은 2019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p>

[별표 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제26조 관련)

업종별	사용 구간별 (톤)	요금(원)										비 고
		2013.01 검침분 부터	2019.07 검침분 부터	2020.01 검침분 부터	2020.07 검침분 부터	2021.01 검침분 부터	2021.07 검침분 부터	2022.01 검침분 부터	2022.07 검침분 부터	2023.01 검침분 부터	2023.07 검침분 부터	
가정용	0 ~ 20	490	550	610	680	760	840	930	1,030	1,140	1,260	
	21 ~ 30	790	880	980	1,090	1,210	1,340	1,490	1,650	1,830	2,030	
	31이상	1,090	1,210	1,340	1,490	1,650	1,830	2,030	2,250	2,490	2,760	
일반용	0 ~ 50	1,010	1,120	1,240	1,380	1,530	1,700	1,880	2,080	2,300	2,550	
	51 ~ 100	1,200	1,330	1,470	1,630	1,810	2,010	2,230	2,470	2,730	3,020	
	101 ~ 300	1,370	1,520	1,680	1,860	2,060	2,280	2,520	2,790	3,090	3,420	
	301이상	1,470	1,630	1,810	2,010	2,230	2,470	2,730	3,020	3,340	3,700	
목탕용	0 ~ 200	790	880	980	1,090	1,210	1,340	1,490	1,650	1,830	2,030	
	201 ~ 300	840	930	1,030	1,140	1,260	1,400	1,550	1,720	1,910	2,120	
	301 ~ 500	950	1,050	1,170	1,300	1,440	1,600	1,770	1,960	2,170	2,400	
	501이상	1,090	1,210	1,340	1,490	1,650	1,830	2,030	2,250	2,490	2,760	
산업용	0 ~ 500	770	860	960	1,070	1,190	1,320	1,460	1,620	1,800	1,990	
	501 ~ 1000	920	1,020	1,130	1,250	1,390	1,540	1,710	1,890	2,090	2,310	
	1001이상	1,310	1,450	1,610	1,780	1,970	2,180	2,410	2,670	2,960	3,280	

[별표 4]

구 경 별 기 본 요 금(제26조 관련)

구분 구경별	구경별 기본요금										비 고
	2013.01 검침분 부터	2019.07 검침분 부터	2020.01 검침분 부터	2020.07 검침분 부터	2021.01 검침분 부터	2021.07 검침분 부터	2022.01 검침분 부터	2022.07 검침분 부터	2023.01 검침분 부터	2023.07 검침분 부터	
13m/m	1,250	1,390	1,540	1,710	1,890	2,090	2,310	2,560	2,830	3,130	
20m/m	3,520	3,890	4,300	4,760	5,260	5,820	6,440	7,120	7,870	8,700	
25m/m	5,690	6,290	6,960	7,700	8,510	9,410	10,400	11,500	12,710	14,050	
32m/m	10,070	11,130	12,300	13,600	15,030	16,610	18,360	20,290	22,430	24,790	
40m/m	16,960	18,750	20,720	22,900	25,310	27,970	30,910	34,160	37,750	41,720	
50m/m	26,100	28,850	31,880	35,230	38,930	43,020	47,540	52,540	58,060	64,160	
75m/m	60,920	67,320	74,390	82,210	90,850	100,390	110,940	122,590	135,470	149,700	
100m/m	104,420	115,390	127,510	140,900	155,700	172,050	190,120	210,090	232,150	256,530	
150m/m	218,540	241,490	266,850	294,870	325,840	360,060	397,870	439,650	485,820	536,840	
200m/m	317,450	350,790	387,630	424,470	469,040	518,290	572,720	632,860	699,320	772,750	

수도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193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28

제38조(공급규정)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총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장수군 공고 제2019-534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장 수 군 수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1) 개정내용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등급이 4급에서 6급까지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 개정대상(3건)
 -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3. 의견제출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전화 063-350-2059, 팩스 063-350-5702)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전화 063-350-20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2.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중 “등록된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8호 중 “1급에서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5조제2항 관련)

대상 순위	만20세 이상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3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제1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제5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대상 순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만20세 이상 장애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 </tr> </tbody> </table>	대상 순위	만20세 이상 장애인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p>제6조(사용자의 의무) ----- ----- ----- ----- ----- ----- ----- ----- ----- -----</p> <p><u>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u>에 ----- ----- ----- ----- -----</p> <p>[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제5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대상 순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만20세 이상 장애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u>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u>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 </tr> </tbody> </table>	대상 순위	만20세 이상 장애인	1	<u>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u>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상 순위	만20세 이상 장애인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상 순위	만20세 이상 장애인														
1	<u>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u>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진료비·사용료·수수료 감면 및 지원 등) ① (생 략) 1. (생 략)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급 내지 3급 장애인 나~바(생 략) ② (생 략)	제5조(진료비·사용료·수수료 감면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바(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사용료·이용료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③ 너울관의 이용료 감면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에 한한다. 1. ~ 7. (생 략)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등록된 장 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에 한한다) 9. ~ 11. (생 략) ④ (생 략)	제25조(사용료·이용료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7. (현행과 같음) 8.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9. ~ 11.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장수군 공고 제 2019-536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일

장 수 군 수

1. 자치법규명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정비
 -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확대,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
- 공무원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특별휴가 사유 추가 신설(입영 및 포상휴가)

3.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 련 조 항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 사용 활성화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현 행</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안</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월 이상 6월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월 이상 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개월 이상 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 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 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상 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상 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body> </table>	현 행		개 정 안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삭제)	(삭제)	6월 이상 1년 미만	6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9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제18조의①
	현 행		개 정 안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삭제)	(삭제)																											
6월 이상 1년 미만	6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9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연가당겨쓰기 도입 -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 쓸 수 있도록 근거 마련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현 행</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안</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다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 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수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상 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분의1</td> <td style="text-align: center;">4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현행〉 사유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사망, 결혼하는 경우에 한함</p>	현 행		개 정 안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없음)	다음	1년 미만	5	연도	1년 이상 2년 미만	6	연가	2년 이상 3년 미만	7	일수의	3년 이상 4년 미만	8	2분의1	4년 이상	10	제19조의2					
현 행		개 정 안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없음)	다음	1년 미만	5																											
	연도	1년 이상 2년 미만	6																											
	연가	2년 이상 3년 미만	7																											
	일수의	3년 이상 4년 미만	8																											
	2분의1	4년 이상	10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 매년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사용을 촉구하여, - 촉구한 연가 중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9조의3																													

구 분	주 요 내 용	관 련 조 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부담 완화정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특별휴가 10일) * (현행)5일 → (개정)10일	별표3
	불임치료사술 휴가 명칭 개선(특별휴가 1일) * (현행)불임치료 → (개정)난임치료	제23조⑨
	모성보호시간 확대(특별휴가 1일 2시간) * (현행)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개정) 임신 초기	제23조⑩
	육아시간 확대(특별휴가 1일 2시간) - (현행) 생후 1년미만 자녀→(개정) 만5세 이하 자녀 - (현행) 1일 1시간 사용 →(개정) 24개월 범위 1일 2시간 사용	제23조⑤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특별휴가 2일, 자녀 셋 이상 3일) - 자녀돌봄휴가 사유에 병원진료, 예방접종도 추가	제23조⑥
기타 제도 정비	특별휴가 사유 확대 - 입영특별휴가: 자녀의 군 입영 시 1일의 휴무 보장 - 포상휴가 :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규정 신설	제23조⑫⑬
	공가 사유 확대 - 결핵검진 및 검역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공가사유로 추가	제22조 5(내용추가), 10(신설)
	용어 변경 - 「병역법」개정(2016.5.29.)에 따라 "징병검사"라는 용어가 "병역판정검사"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개정	제22조 제1호

4. 참고사항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4. ~ 6. 3.(20일간)

5. 의견제출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행정지원과)

- 팩 스 : 063-350-57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서무후생팀(☎ 350-2156)에 문의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장수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연가 당겨쓰기) 군수는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19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군수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군수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제22조제1호 중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를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제2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6항 중 “「영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다음”으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셋 이상일”을 “3명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3조제9항 본문 중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병원 진료”를 “병원진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10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9조의2(연가 당겨쓰기) 군수는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 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상 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p>〈신 설〉</p>	<p>제19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p> <p>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촉구</p> <p>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군수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군수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p>												
<p>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p>	<p>제22조(공가) ----- -----.</p> <p>1.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p>												

현 행	개 정 안
<p>2 ~ 4. (생 략)</p> <p>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p> <p>6 ~ 9. (생 략)</p> <p>〈신 설〉</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p> <p>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p> <p>⑥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신 설〉</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p> <p>6 ~ 9. (현행과 같음)</p> <p>10.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원의 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p>⑥ ----- 다음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3명 이상인 ----- ----- . -----</p> <p>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⑦·⑧ (생 략)</p> <p>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p> <p>⑩ 임신중인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⑪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p> <p>⑦·⑧ (현행과 같음)</p> <p>⑨ ----- <u>난임치료</u> ----- ----- ----- -----</p> <p>⑩ ----- <u>여성공무원</u> ----- ----- ----- <u>병원진료</u> ----- -----</p> <p>⑪ (현행과 같음)</p> <p>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p>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10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교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교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장수군 공고 제2019-53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일

장 수 군 수

1. **조례명** :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법령(근로기준법)이나 지침(청소년사업안내)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센터장의 지위 및 근무형태에 대한 강행규정 삭제(안 제5조 3항)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별표1)에서 자치단체 직영 시 센터장의 전임은 자치단체장의 선택사항임에도 우리군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어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종사자의 복무 및 보수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7조 및 안 제9조)
 - 근로 계약 시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복무 및 보수 등의 개별규정(기간제 또는 공무원 관리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에 따른 52시간 근무적용 규정에 따라 운영시간 변경(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주민복지실장)
- 2) 팩 스 : 063-350-5703
- 3) E-mail : jh0218@korea.kr
-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주민복지실 담당자(전화 : 063-350-21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프로그램시설”을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를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시간) ①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 18:00
2. 휴 무 일 :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시설 운영 사업</p> <p>제5조(조직 및 인력) ①·② (생략)</p> <p>③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p> <p>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p> <p>제7조(복무 등)</p> <p>①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장수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장수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제8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운영시간</p> <p>가. 평일 및 토요일 : 09:00~18:00</p> <p>나. 야간 상담 : 평일 18:00~21:00</p> <p>2. 휴무일 :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p> <p>② 제1항에 따라 야간상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휴무를 할 수 있다.</p> <p>제9조(보수 및 여비)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장수군 여비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기능)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프로그램 -----</p> <p>제5조(조직 및 인력)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 -----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 -----.</p> <p>〈삭 제〉</p> <p>제8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 00~18:00</p> <p>2. 휴무일 : 토요일 및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p> <p>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p> <p>〈삭 제〉</p>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